



밀실 매국 사기 살농 협상, 한-중 마늘협상의 전모를 밝힌다

2003년부터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농민들은 할 말 잃어

2003년부터 마늘 긴급 산업피해구제조치(세이프가드)를 연장할 수 없다는 한-중 마늘협상 부속서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50만 마늘농가와 400만 농민 4,700만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2003년 이후 세이프가드 연장을 건의한 농민들은 분노와 허탈감, 좌절에 빠져 있다. 산지에서는 올 여름·가을의 마늘 파종 포기 러시와 함께 마늘가격 폭락사태마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농연은 7월 19일 마늘 주산지 시군회장단 간담회와 20일 도회장단 회의를 잇달아 열어, 7월 26일 주산지별 대규모 집회 개최와, 9월 9일 “김대중 정권 농정실패 규탄을 위한 400만 농민 총궐기대회”를 갖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한-중 마늘협상 관계자의 파면,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 촉구, 정부의 마늘산업 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마늘 세이프

가드 연장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자세로 나오고 있어 400만 농민과 4,700만 국민들의 총력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대 매국 굴욕 협상, 한-중 마늘협상의 경과

한-중 마늘과동은 2000년 6월 1일 국내·국제법 절차를 거쳐 마늘농가의 보호를 위해 발동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핸드폰·폴리에틸렌 수입을 금지시키면서 견장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중국의 수입제한 조치 해제를 1차 목표로 한-중 마늘협상의 초점을 맞췄던 정부는 3차에 걸친 경제장관회의(농림부, 재정부, 산자부 장관이 참여)를 통해 마늘 세이프가드 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축소하기로 하고 동년 7월 31일 중국과 서명함으로써 ‘제1차 한-중 마늘협상’이 끝났다.

하지만 중국의 오만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저율관세(30~50%)로 민간업체들이 자유롭게 수입하기로 결정했던 관세할당량(Tariff Quota : TQ) 물량에 대해서까지 우리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또다시 통상압력을 가해 왔다. 이에 굴복한 우리 정부는 민간 수입물량까지 농안기금을 들여 비싼 값에 수입하여 엄청난 손해를 지고 동남아 지역에 재수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 와중에 2000년 당시 협상으로 이득을 본 핸드폰·폴리에틸렌 업체들의 “고통분담”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사대 굴욕협상의 결과도 모자라 2003년부터 마늘 세이프가드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부속서”의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우리 정부는 400만 농민과 4,700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도덕성마저 잃게 되었다.

외통부 최종화 국장이 서명한 자필 서신, 부속서로 둔갑

그렇다면, 한-중 마늘 밀실 사기협상의 핵심인 이른바 “부속서”의 정체는 무엇인가? 7월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줄기찬 요구로 겨우 빛을 보게 된 “부속서”는, 국내·국제법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통부 일개 국장이

작성하여 한국 마늘산업을 내다 판 영터리 서신이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00년 7월 14일 당시 외통부 최종화 지역통상국장은 자신의 명의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신자로 하는 자필 서신을 작성했다. 소위 ‘한-중 마늘협상’ 부속서로 알려진 이 문건은, 협정문 본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고, 마늘 수입 기간에 대한 내용만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으며, 단지 “2003년 1월 1일부터 한국기업은 (냉동·초산조제 마늘을)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최종화 국장이 중국 측에 써 준 이 문서는, 외교 관례나 국내·국제법상 커다란 하자를 지니고 있다. 우선 이 문서가 7월 15일 가서명이나 31일의 본서명 때에도 빠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 또, 우리 무역위원회의 조사·판단에 따라 정부 당국(재정경제부)이 최종 결정해야 할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당시 협상 담당자들은 세이프가드 만료 시한 2년 6개월 전

부속서 [2000년 7월 14일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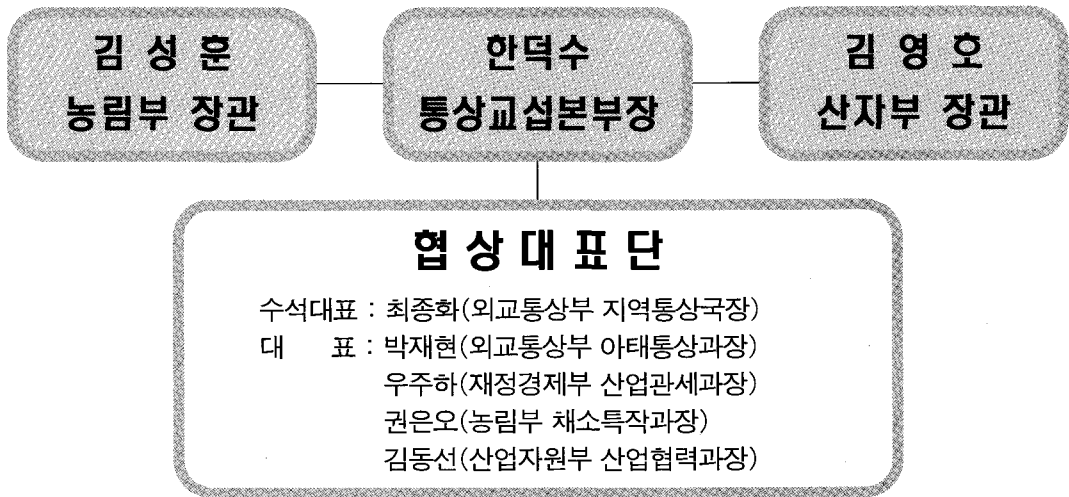
◎ 합의문서에 따른 수입기간 표기

- 1차년도 : 2000년 1월 ~ 2000년 12월 31일
- 2차년도 : 2001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 3차년도 :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 “2003년 1월 1일부터 한국기업은 (냉동·초산조제 마늘을)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고 표기됨



(그림) 2000년 7월 한-중 마늘협상 당시 한국측 협상 대표



※ 자료 : 조선일보, 2002. 7. 18

에 이미 위법적으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는 국내 법상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WTO가 보장하고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권리를 우리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결과인 것이다. 한 마디로 한-중 마늘협상은 정부 당국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위법적인 밀실·매국·사기·살농협상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럼에도, 당시 협상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8·8 재보선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 당시 협상 책임자였던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서규용 농림부 차관(당시 농림부 차관보)의 사표를 수리하여 사태를 무마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아래 그림은 당시 한-중 마늘협상에 참여했던 협상 관계자에 관한 도표이다.

이처럼 농업·농촌·농민을 값싼 국가간 흥정 대상으로 매도하며 7천만 민족의 생명줄을 옥죄

는 공무원들의 사대 매국·사기·태만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 관철하고, 사대 매국 반 농업세력을 철저히 응징하자

무역위원회는 7월 29일까지 농민들의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 요구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26일에 펼쳐질 한농연의 전국 동시다발 집회는, 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 연장 조사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나아가 9월 9일의 “400만 농민 총궐기대회”와 대선 정국을 겨냥한 한농연의 정책 대응 활동을 통해, 11월 말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농연은 온 힘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4,700만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업고, 세이프가드 연장 관철과 농업시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농연**